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 15)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대림의원)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약자 등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신설>	10. <u>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9. (생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관광기본법」은 관광분야 기본법으로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관광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

기본계획에는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반 조성,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과 재원 배분,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²⁾에 따라 K-컬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혁신, 국내여행 지원, 지역관광자원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 2022년 12월)」은 ‘K-컬처와 함께한 관광매력국가’라는 비전 하에 ①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②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③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④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의 4대 전략을 세부 추진과제로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³⁾의 관광활동이 원활하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5.5%,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47회임. 이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3%,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3.77회,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4%, 1인 평균 국내 여행 횟수가 3.64회로, 고령자, 저소득층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3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국내여행 경험률이 55.9%,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1.8회로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는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식음료·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도 아울러 추진 중임.

3)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어린이, 임산부 등 포함

그러나, 2023년 기준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관광지점⁴⁾ 2,752개 대비 2024년까지 추진된 ‘열린관광지’ 개소는 162개소(5.9%)로 여전히 낮은 비율이고,⁵⁾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도 2024년 기준 2개소(강릉시, 울산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으로써,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일관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광여건 개선 정책의 수립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기본계획’상의 장애인 등 관광정책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⁶⁾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⁷⁾ 개정안의 ‘관광약자’라는

4) 「20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문체부)에 따른 것이며, “관광지점”은 「관광진흥법」 등 관광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관광지점 범위**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지점으로 선정된 곳으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을 의미함.

* 관광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39개 법령

** 주요관광지점 범위: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관광진흥법),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문화재 보호법), 박물관·미술관 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농원·주말농원 등(농어촌정비법 등)

5) 2024년도에는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6)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은 여행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누리는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관광지’의 지속 확대,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관광약자 여행연결망 구축,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7)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표현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관광약자’ 외에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소방공무원 52,802명을 대상으로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들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0년 1104명에서 2022년에는 1844명으로 3년 새 67%나 증가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인원도 2020년 46명에서 2022년 67명으로 46% 급증하였음. 교원의 경우에도 202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9%가 교원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한다고 하였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처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의 경우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 종사자이므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관광 활동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등의 직업군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이미 해당 직업군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①해당 직업군의 근무환경·여건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②공공분야가 아닌

민간분야 종사자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타 직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의 복지 지원을 위한 개별법상 근거

법령	조 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 <u>수련원, 연수원</u> 라. <u>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u> 마. <u>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u>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u>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법령	조 항
기본법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u>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u>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u>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